

제 298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1972. 10. 18.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차 례

이 양무오관
 편집
 1972. 3. ...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규 칙		
제 1262 호	서울특별시관광사도업시설에대한 검사규칙	3
제 1263 호	광고물등단속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	11
제 1264 호	서울특별시기획조정위원회규정중 개정규칙	12
제 1265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	12
◎ 고 시		
제 141 호	서울시철거민 정착단지조성을위한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시설결정	18
◎ 훈 령		
제 362 호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회규정	21
◎ 사 령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관광사도업시설에 대한 검사 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62호

서울특별시관광사도업시설에 대한 검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사도업의 건전한 운용과 이용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도업시설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시장은 관광사도업사업의 개시 승인후 매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임시검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임시검사를 실시한다.

- 1. 법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신고를 한후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때.
- 2. 법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후 그 사업을 개시하

고자 할때.

3.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4조(검사사항) 전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검사사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검사반의구성) ①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도검사반(이하 "검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검사반은 반장 1인, 4인이내의 검사관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술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반장은 관광과장이 되며 검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 1. 기계분야: 운수행정과 정비계장
- 2. 전기분야: 총무과 관리계장
- 3. 토목, 건축분야: 영선과 공사계장
- 4. 안전분야: 기전과 안전관리계장

④간사는 관광과 관광지도계장이 된다.

⑤검사반 구성인원은 별도의 임명조치없이 당해 직위의 보직으로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⑥시장은 검사관이 유고로 검사업무에 임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 6 조 (검사반의 임무) ① 반장은 검사반을 지휘 감독하며 검사업무를 통리한다.

② 검사관은 반장의 명을 받아 각각 담당 기술분야별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③ 검사기술 요원은 검사관을 보조하며 검사관이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④ 간사는 반장의 명을 받아 검사반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현장고정) ① 검사반장은 검사결과 결함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제 2 호서식에 의한 현장 고정지시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지시서를 발부받은 관광사도업자는 10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검사결과보고) 검사반장은 검사완료후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조 (개선명령) 시장은 관광사도업의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결함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광사도업자에게

이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조치결과보고) 관광사도업자가 전조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0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확인검사) 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조치사항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검사증의 교부) 시장은 관광사도업의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결함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표 제 3 호에 의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교통부장관의 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검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제 1 호

검 사 보

(1) 기 계 부 분

구 분	종 별	조 사 부 분	비 고
와 이어 로 프 (지삭, 예삭, 보조삭)	품 질 형 태 보 증 단 력 제 조 소 직 경 (m / m) 주 위 (m / m) 부 개 (m 당) 설 치 년 월 일 산 록 부 의 상 태 중 간 부 의 상 태 지 주 부 의 상 태 산 정 부 의 상 태		
긴 장 장 치	긴 장 추 의 중 량 긴 장 추 의 행 정 긴 장 추 의 R 도 계 유 무 " 소 켓 트 " 의 이 완 " 소 켓 트 " 의 손 상 예 비 쇄 정 의 유 무 예 비 쇄 정 의 이 상		
안 내 도 른	구 조 상 의 결 함 유 무 축 수 부 의 유 간 정 도 방 향 전 환 의 부 하 정 도 도 른 의 탄 손 이 상 중 간 지 주 의 지 삭 (Saddle)		
반 기	현 수 부 의 손 상 마 모 구 열 에 삭 코 린 의 치 합 상 태		

(2) 시 설 부 분

구 분	종 별	조 사 부 분	비 고
시 설	건축 구조물 지삭 고정기초 (정초) 구조물기초이상 유무 철탑의 구조 피뢰침의 설비 안내도륜 취부 구조물 지 질		

(3) 전 기 부 분

구 분	종 별	조 사 부 분	비 고
기 계 설	"다그넷트스위치"의 성능 절전시 정전시 및 정지한계 돌파시 자동 성능 재본기의 성능 배전반 각종 계기의 성능 저항기의 성능 전기기계의 절연 피뢰침 (산정, 산록, 중간, 지 주, 유선전화) 피뢰기 (산정, 산록, 중간, 지 주, 유선전화) 전동기의 성능 조 명 장 치 제비원 동기 과부하 자동신호 장치 유선무선신호 및 전화설비(산 록부, 반기, 운전실, 기계실)		

(4) 안전 분야				
구분	종	별	조사부분	비고
일 사	반 항	운전사던허(유자격자) 여부(예비운전사포함) 예비발전시설(자가발전 유무) 정기안전검열 시행계획유무(점검대상개소 적부성포함) 신호방법적부(전화 및 신호증) 소 화 시 설 적 부 와이어로프중량수용력(지탱력) 적부 스트 드 (Strand) 수 스트 드 와이어수 유(U)볼트의 고림(Clip) 방법 적부 소켓트(Suketing) 방법 적부 훅크(Hook)의 중량 수용력(지당력) 적부 훅크스링(Sung) 앵글도수 적부 급유방법 및 급유시기 적부 와이어로프의 점검사 자격 및 점검시기적부 안전수격 게시 여부 안전에 대한 안내대책 적부		
반 기		부분예상 손상 야간조명등의 기능상명의 부식 및 손상 비상탈출구의 보안장치 비상탈출"로프" 조구의 기능 내외장판의 적합 및 골주의 적합 상태		

구 분	종 별	조 사 부 분	비 고
반 기	출입문의 보안장치기능 및 부 분품 손상 내부 문열쇠 유무 기체의 좌우 경사도 (공차시) 현수부와 기체적합의 상태 반기유도운의 기능 신호장치의 기능 반차내 자동제동기 지삭 및 예삭 보조삭 긴장장 치 유무		
운 전 실	자동제동장치 성능 수동제동장치 성능 반기가 과속할때 예삭제동 및 전자제동의 성능 불시 정전 또는 불시운전 정 지시의 응급방법 속도계 및 예령장치 (경보) 공력계 및 예령장치 (경보) 차량위치 표시기 및 예령 장치발착 예보장치		
기 제 실	왕추동윤의 추왕 추동윤의 전 달치차 왕 추동윤의 와이어프링의 기능 회전축운동부의 기능 수동부레키의 작용능력 전자부레키의 작용능력 예비원동기의 능력 예비원동기의 시운전 추동윤제동작용 능력 동력전달장치의 축수성능		

별표 제 2 호

현 장 교 정 지 시 서

계 호

수 신

197 년 월 일 - 원 일까지 실시한 삭도검사
결과를 하기와 여히 현장 교정지시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교 정 사 항	교 정 완 료 일 자	비 고

197 년 월 일

검 사 반 장 성 명

별표제 3 호

검 사 조

1. 상호 기타 성명

2.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주 소

4. 영업소 소재지

5. 면허번호 및 면허년월일

6. 검 사 일

7. 검사유효기간

자 . 년 월 일

지 .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광고물등 단속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
1972년 10월 10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 1263 호

광고물등 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광고물등 단속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 2 호중 " 6 " 다음에 " 7 .
버스차내부 광고물 "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치	규 격	설 치 방 법	색 채
버스차내부 좌석 상부 및 후부공간	가로 30 센치 × 세로 60 센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려한 액자안에 설치. 2. 밀착시켜야 한다. 3. 1 개 차내 동일 내용 1 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4. 승하차객에 불편없도록 하여야 한다. 5. 1 개 차내 8 개이내로 한다. 	4 - 5 색

별표 제 2 호중 " 7 " 을 " 8 " 로 하고 종별란 " 전주광고 " 다음에 " 버스차내부광고 " 를 신설하며 기간(일)란에 " 30 " 으로 한다.

별표 제 2 호중 " 8 " 을 " 9 " 로 , " 9 " 를 " 10 " 으로 , " 10 " 을 " 11 "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64호

서울특별시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국장 과 비상계획관, 주택관리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경찰국장은 자기소관 사항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월 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265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서울특별시 경찰관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 구역표중 청량리 경찰서란의 「면목파출소」 다음에 「용마파출소」를, 노량진경찰서란의 「관악파출소」 다음에 「시흥파출소」를, 「난곡파출소」 다음에 「고관파출소」를, 동부경찰서란의 「성수2가파출소」 다음에 「성수3가파출소」를, 「중곡파출소」 다음에 「군자파출소」를 각각 신설하고, 그 위치와 관할 구역및 기타 파출소의 관할 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경찰관파출소의 명칭위치및 관할구역표

서별	명칭 위치	관할 구역
성 동 경 찰 서	용곡파출소 성동구신당동 250-10	신당동 186-230, 233-235, 237, 279 293-303.
	무악파출소 성동구신당동 329-6	신당동 231, 232, 236, 241, 243, 296-301, 304, 305, 307, 309, 312 313, 320, 387-390, 393-395, 397- 399, 400-405.
청 량 리	역전파출소 동대문구전농동 588	전농동 588, 591-592, 593-611, 612 -615, 617, 620-622, 624, 637. 청량리동 172, 175-179, 180 (제 청 량리 2 동 1 통, 청량도 1 동 11, 12 통), 181 (제 청량리 2 동 2 통, 청량리 1 동 11 12 통), 188 제기동 13 (제기 1 동 1 통중 1 - 6 반), 용두동 8, 9.
	청량리 동대문구청량리동 166 파출소	청량리동 (제산 2 - 산 8, 190-205), 산 1 (제청량리 2 동 3 통, 9 통), 180(청 량리 1 동 11, 12 통), 181 (청량리 1 동, 11 통 12 통), 제기동 95, 96, 13(제기 1 동 1 통 (제 제기 1 동 1 통중 1 - 6 반), 2, 3, 10, 11, 12, 13 통, 5 통중 1 반)
경 찰 서	전농파출소 동대문구전농동 643의 44	전농동 333, 335, 337-344, 347, 403, 404, 410, 420-426, 429-437, 440-471, 474, 478, 486, 490, 497 504, 518, 519, 524, 530-532, 538 541, 544, 547-549, 553, 558, 643 -651.
	경춘파출소 동대문구전농동 558-199	전농동 25의 3, 26, 204, 206-587(전 농 4 동 6 - 19 통, 전농 1 동 8 통 14 통,

서별	명칭(위치)	차관할구역
		계 전농동 204, 206, 209, 211 중 2, 3통).
청량리	전곡파출소 동대문구전농동 103-3	전농동 1 - 205 (계 전농동 3 - 7, 27, 29-31, 33, 35, 36, 38, 41, 42, 46, 53-57, 59, 60, 64-67, 72, 74, 75, 125, 138, 183, 184, 204), 209, 211(전농 2, 3동), 604, 605 (전농 2동), 584, 589, 663, 산 8, 산 9, 산 11.
리	기곡파출소 동대문구전농동산 32-1	전농동 3 - 16, 18-24, 25 (제 3호), 27-90, 181-186, 188, 190-196, 204-206 (계 경춘파출소관할), 295의 15-295의 16, 295의 96-295의 102, 산 3 - 산 42 (제산 8, 산 9, 산 11) 연북동 1049
파	신답파출소 동대문구답십리동 276-1	답십리동 12의 3 - 12의 47, 13-19, 21-23, 25, 34, 100, 260-265, 267-270, 276, 277, 485-490, 492-495, 500-523.
출	장안파출소 동대문구답십리동산 2 - 9	답십리동 산 1 - 산 15, 1-102 (계 답십리 2동 12의 3 - 12의 47, 13-19, 21-23, 25, 34, 100), 182, 241-259, 266, 286, 294, 340, 360, 361 (답십리 2동)
소	휘경파출소 동대문구회기동 60-39	회기동, 휘경동 산 9, 산 10, 181-183, 187, 189, 191, 267 (제 5통), 306, 309-315, 317-321, 325, 371. 이문동 339, 341, 343-345, 346 (제 이문파출소관할), 347.
파출소	중량교 동대문구휘경동 7-10	휘경동 (계 산 9, 산 10, 181-183, 187, 189, 191, 267 (5통), 306,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정 량 리 파 출 소	이문파출소	동대문구이문동 288의 97	309-315, 317-321, 325, 371) 이문제1동 71-83, 85-90, 92-101, 103, 112, 114-126, 130, 134, 138, 140-162, 257 (제2동 13-15통), 258, 260, 262-267, 270-277, 280-281, 286, 287-300, 302-304, 346 (제취 경파출소관할); 363, 163 (제3동 지 번호수를 제외한 전부), 285 (제2동 지번호수를 제외한 전부) 석관동 333.
	신 이 문 파 출 소	동대문구이문동 250	이문2동 255, 257 (제 이문2동 9, 10, 11, 12통) 이문3동 1-11, 13-15, 38-48, 51- 58, 60-66, 164, 165, 167-174, 176, 177, 180-184, 187, 208, 230 -232, 234, 236-238, 241-252, 254 -257. 석관동 (제 333, 제 장위파출소 관할)
	면목파출소	동대문구면목동 977-2	면목동 (제 1049 제 용마파출소 관할)
	용마파출소	동대문구면목동 353-3	면목동 산 1, 산 38-산 78, 112, 126, 144, 148, 205, 220, 316, 339, 340, 341, 347-349, 351-354, 357, 362, 364, 368, 370, 372-379, 381 -385, 389-403, 406, 408, 409; 412, 459, 461-476, 480, 483, 496 -500, 502-512, 523-524, 527-547, 550, 551, 553-555, 557, 559-580,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583-585, 592-597, 600-805, 842-853, 900, 1060, 1063, 1065-1110, 1147, 1223, 1315, 1326, 1332,
노 량 진 경 찰 서	관악파출소	영등포구시흥동 317	시흥동 (제 시흥파출소 관할)
	시흥파출소	영등포구시흥동산 89	시흥동 80, 145-146, 180, 182-198 200-207, 209-212, 214-230, 232-235, 237-241, 244-245, 250, 252, 253, 255, 256, 257, 259-267, 269-273, 276, 277, 279, 315, 381-389, 394-407, 409-413, 415, 416, 418, 산72, 산73, 산75, 산77, 산80, 산83, 산84, 산88, 산89, 산91-산93, 산98, 산100-산102, 산108, 산109, 산112, 산114-산118.
	신림파출소	영등포구신림동 82	신림동 1-93, 409-445 (구역정리번호 161, 162), 488의 8의가, 산159의 3-산183, 산185, 산187, 산188.
	난곡파출소	영등포구신림동 634	신림동 (제 신림파출소 및 교관파출소 관할구역)
	교관파출소	영등포구신림동 289	신림동 94-408, 산1-산89, 산141-산157의 1, 산134-산138.
동 부 경 찰 서	성수 2가 파출소	성동구성수동 2가 344-2	성수 2가 (제 4, 13, 14, 22-58, 60-89, 91-93, 95-116, 121-128, 130-142, 145-156, 158, 160-181, 186, 187, 190-193, 195-205, 207, 210, 235-240, 244-251, 282-334).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동 부 경 찰 서	성수3가 파출소	성동구성수동2가 49	성수2가 4, 13, 14, 22-58, 60-89, 91-93, 95-116, 121-128, 130-142, 145-156, 158, 160-181, 186, 187, 190-193, 195-205, 207, 210, 235- 240, 244-251 자양동 426-435, 437, 443, 446-448, 451-480, 482-484, 487-527, 531- 553
	신양파출소	성동구구의동 457-1	신천동, 잠실동 자양동 (제 426-435, 437-443, 446- 448, 451-480, 482-484, 487-527, 531-553) 구의동 (재 2-444)
	화양파출소	성동구송정동 63	송정동 (제 73, 74, 76) 모진동, 화양동 능동 436의 1-5, 71, 438, 439, 산3-2 군자동 (제 205, 206)
	중곡파출소	성동구중곡동 150-6	중곡동 (제 458, 503, 518) 능동 (제 436의 1-5, 71, 438, 439, 449-451, 산3-2)
	군자파출소	성동구군자동 205	송정동 73, 74, 76 군자동 205, 206 중곡동 458, 503, 518 능동 449-451

고 시

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2. 10. 16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제 141 호

서울시철거민정착단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설결정

1. 서울시 철거민정착단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설결정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제 4 항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

1. 시설명: 서울특별시 철거민정착단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설결정
2. 위치: 시내 서대문구 신사동 산 93 번지일원
3. 면적: 23,500 평 (시유지)
4.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가. 가로조서

로 선 명	폭 원	연 장	기 절	종 점	비 고
소 1-1	10 m	102 (75)	소 3-2	대 3 - 32	() 는 사업구역의 연장거리임.
" 2-1	8 "	51 (198)	산 93	대 3 - 32	
" 3-1	6 "	42	산 93	소 3 - 2	
" 3-2	6 "	418 (266)	소 3-1	대 3 - 32	
" 3-3	6 "	262 (60)	산 93	대 3 - 32	
" 3-4	6 "	122	소 3-2	산 51- 1	
" 3-5	6 "	227 (45)	산 93	소 1- 1	
" 3-6	6 "	137 (66)	소 3- 2	소 4- 33	
" 4-1	4 "	94	소 3- 2	산 90 임	
" 4-2	4 "	78	소 4-36	209 전	
" 4-3	4 "	36	산 93	소 3- 3	
" 4-4	4 "	36	산 90	소 3- 3	
" 4-5	4 "	27	산 90	소 3- 3	
" 4-6	4 "	48	209 전	소 3- 3	
" 4-7	4 "	48	234 전	소 3- 3	
" 4-8	4 "	36	234	소 3- 3	

로 선 명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소 4 - 9	4 m	38	234	소 3-3	
" 4 - 10	"	25	223-7 전	"	
" 4 - 11	"	35	산 93	소 3-4	
" 4 - 12	"	41	산 93	"	
" 4 - 13	"	70	소 3-3	"	
" 4 - 14	"	49	산 51-2 임	"	
" 4 - 15	"	67	소 3-3	"	
" 4 - 16	"	44	소 3-3	237 전	
" 4 - 17	"	54	소 3-3	소 1-1	
" 4 - 18	"	49	"	"	
" 4 - 19	"	46	"	"	
" 4 - 20	"	71	소 3-4	소 3-5	
" 4 - 21	"	63	소 1-1	"	
" 4 - 22	"	48	236 답	"	
" 4 - 23	"	69	소 3-5	소 2-1	
" 4 - 24	"	43	소 3-5	"	
" 4 - 25	"	45	소 3-5	"	
" 4 - 26	"	37	"	238 답	
" 4 - 27	"	28	"	"	
" 4 - 28	"	35	"	239-1 전	
" 4 - 29	"	45	"	소 2-1	
" 4 - 30	"	31	"	산 53	
" 4 - 31	"	70	산 58 임	소 3-6	
" 4 - 32	"	58	소 3-6	소 4-47	
" 4 - 33	"	52	소 4-44	소 4-47	
" 4 - 34	"	51	345	277	
" 4 - 35	"	74	소 3-2	산 76	

로 선 명	폭 원	연 장 기	종 점	비 고
소 4-36	4 m	23	소 3-2 산 87	
" 4-37	"	41	산 93 임 소 3-2	
" 4-38	"	67	소 3-2 산 88-2 임	
" 4-39	"	46	소 4-19 235-4 전	
" 4-40	"	49	소 3-5 소 3-5	
" 4-41	"	82	소 4-22 236-1 대	
" 4-42	"	24	소 4-31 63-5 임	
" 4-43	"	36	소 4-31 63-5 임	
" 4-44	"	90	소 4-31 243-2	
" 4-45	"	54	소 4-34 277-2	
" 4-46	"	60	소 4-32 소 4-33	
" 4-47	"	80	대 3-32 소 4-33	

나. 공원시설조서

공 원 명	면 적	비 율	비 고
자 연 공 원	433	1.9	산 산 93 임

별첨도면참조 (도면생략)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 제 362 호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197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화재예방과 진압 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3.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 수리시설 확보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조 (조직)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②위원은 기획관리관, 내무국장, 소방본부장, 청소국장, 도시계획국장, 보건사회국장, 수도국장, 산업국장, 경찰국장, 공보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및 한국전력주

식회사 영업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의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5 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건 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간사와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방행정과 서무계장이 된다.

제 8 조 (시행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1972.10.11.

윤영학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972년 10월 13일

대 통 령